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531
- 제 안 자 : 이광호 의원(찬성의원 18명)
- 제 안 일 : 2019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 차별 금지와 장애인의 참여 환경 조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바 이를 반영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
(안제11조제1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안 제1조, 안 제 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 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고,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며, 기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로 개정(안 제3조제2항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6. (생략) ③ (생략)	제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3. (생략) 4. ----- 건설기술인 ----- ----- ----- 5.~6. (생략) ③ (생략)

- 안 제3조 제2항 제4호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자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법률 제14839호, 2017.8.14., 일부개정]

나.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개정(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심신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바,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5. (생략)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1.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u> ----- ----- 2. ~ 5. (현행과 같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따른 정의가 없고, 마음과 정신의 쇠약 또는 신체와 정신의 쇠약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심신쇠약’이 ‘심신장애’의 뜻을 대신하거나, 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법령(「민법」, 「형법」 등)에서는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장애(心神障礙), 심신미약/심신박약(心神微弱/心神薄弱) 등 심신(心神)을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의사결정 능력 또는 책임능력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의 해촉 요건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2016.2.3.)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 16개를 개정하도록 권고²⁾ (2018.10.31.)한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사항 >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한편, 법제처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건강에 관하여 해촉 사유를 규정할 때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행정자치부 제시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련 입법 표준안 >

<p>제○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p> <p>○○○ 장관(각 부·처·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 별첨 1.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법제처,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

IV. 검토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의견

- 현행 입법례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해촉사유로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이 있는 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심신장애'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심신쇠약'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허약해진 상태를 말하므로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고, 위촉된 위원이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입법 표준안 제3호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입법모델과 같이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법제처, 2015.12.1., 법령안 심사기준 -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법제소식 (2015년 12월호, 통권 제43호) p2~13 중 10p 발췌

- 따라서, 법제처의 검토사항과 같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현행 '심신장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와 같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심신쇠약'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19P)에서는 심신장애를 정신질환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안 제11조 제1호의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신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또한, 안 제11조는 조 제목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위원 해촉’으로 사용³⁾하도록 순화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수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수정의견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 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 안 제15조).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시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247p 발췌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개정조례안 자구 정비 사항>

조문	현행	개정안	비고
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 제60조 제2항의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알법(70P) - 띄어쓰기
2조 1항	- 당해	- 해당	- 알법(161P)
2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도 -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항에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알법(70P) - 알법(201P, 66p)
3조 2항	- 「고등교육법」에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 제2조의	- 근거 명확화, 띄어쓰기 - 알법(70P)
6조 1항	- 제107조의 규정	- 제107조	- 알법(70P), 띄어쓰기
6조 2항	- 제1항의 규정	➡ - 제1항	- 알법(70P)
6조 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2항에 따른	- 알법(70P)
10조 1항	- 제8조 제3항의 규정 - 없는 한	- 제8조 제3항 - 없을 때에는	- 알법(70P) - 알법(221P)
10조 2항	- 제8조 제3항의 규정	- 제8조 제3항	- 알법(70P)
14조 2항	- 제9조의 규정	- 제9조	- 알법(70P)
12조의2 4항 제15조	-관하여	-	알법(41P)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

별첨1.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서울시 조례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7년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추진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친화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의 유도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조례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보고서 최종전해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경우에도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된 부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16.2.3)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위원 위촉 해제 사유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참고자료 :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 10월 31 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참고〉

□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사유 조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2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위원의 임기)
3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4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5	건축기본조례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7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22조(위원의 해촉)
8	건축 조례	제5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10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해고)
11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위원의 해촉)
1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13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해촉)
14	주거기본조례	제16조(해촉)
15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16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해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8조(인식제고)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견고히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